

가정위탁
보호업무
안내서

가정위탁 보호업무 안내서

가정위탁 보호업무 안 내 서

Contents

제1장 | 가정위탁

- 04 1. 정의
- 2. 목적
- 3. 근거
- 4. 추진 배경
- 05 5. 대상아동
- 06 6. 유형
- 7. 가정위탁 선정 및 관리

제2장 | 가정위탁 신청

- 07 1. 유형별 선정절차
 - 가. 대리양육, 친인척 가정위탁
 - 나. 일반 가정위탁
- 11 2. 지원내용

제3장 | 어린이재단 지원 서비스

- 13 1. 보육/학습지원(결연후원)
- 2. 의료/주거/생활안정지원
- 3. 인재양성지원
- 4. 초기정착/전문가정위탁 지원

- 15 상시업무 안내
- 16 업무협력 사항
- 17 위탁 선정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례

01

제1장

가정위탁

1. 정의

2017 서울특별시 아동복지 사업안내 P157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 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2. 목적

2017 서울특별시 아동복지 사업안내 P130, P138, P157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가정보호를 우선하도록 하며, **특히 만2세 미만 영아의 경우 가정보호 우선 실시 필요**

3. 근거

2017 서울특별시 아동복지 사업안내 P158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제15조(보호조치),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59조(비용보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 제3항(급여의 기준), 제7조(급여의 종류),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제14조의 2(급여의 특례)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등 관련 조항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유엔아동권리협약 정신에 기초한 '선 가정보호, 후 시설보호'

2005년 아동복지법에 가정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5. 대상아동

2017 서울특별시 아동복지 사업안내 P158

2017 서울특별시 아동복지 사업안내 P159

가. 보호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만18세 미만의 아동(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TIP

- 만2세 미만 보호필요아동은 가정위탁 우선배치
-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지 못하는 상황: 아동학대, 이혼, 중독, 수감, 질병 등

나. 보호연장가능아동(아동복지법 제16조)

보호조치 중인 만18세 이상 아동 중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면 위탁보호기간 연장가능

| 법조문 | 법조문 | 적용안내 |
|----------------|---|--|
| 법 제16조 제2항 제1호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에 재학 중인 경우 | 대학기간 전체에 대해 연장 * 군입대, 어학연수는 중지사유 * 질병, 사고로 인한 휴학을 제외하고 단순 휴학은 종료사유 |
| 법 제16조 제2항 제2호 | 제52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양육 시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동안 지원 * 중도 탈락할 경우 연장 종료 |
| 시행령 제22조 제1호 | 만20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 만20세 미만까지 지원 |
| 시행령 제22조 제2호 | 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질병·장애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 만25세 미만까지 지원 * 장애·질병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의 판정 준용 |
| 시행령 제22조 제3호 | 만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 이상 84이하인 사람으로서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 만25세 미만까지 지원 |
| 시행령 제22조 제4호 |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 연장하는 경우 | 만18세 도달 시점(고등학교 졸업)에 1년 이내 범위에서 보호기간 연장 |

6. 유형

2017 서울특별시
아동복지 사업안내 P160~161

- 가. 대리양육 가정위탁: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나. 친·인척 가정위탁: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 등에 의한 양육)
- 다. 일반 가정위탁: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 구분 | 법조문 |
|----------------------------------|---|
| 가. 위탁가정 선정기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 위탁 아동과의 나이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자녀가 없거나 자녀(18세 이상 제외)의 수가 위탁 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 위탁가정을 희망하는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가족구성원이 없을 것 <p>>>TI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가정의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최근3년)등 증빙자료 요청 • 위탁가정 선정을 위한 위탁가정의 사정 및 교육은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으므로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와 협력이 필수적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는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 나. 위탁가정 교육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사람(위탁부모 중 1명 이상)은 반드시 기본 4시간의 위탁부모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함. 다만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가정의 경우에는 가정위탁 후 6개월 이내 교육이수 •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일반,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 부모는 매년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가정의 경우 교육이수 대상자가 노령,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 |

02

1. 유형별 선정절차

2017 서울특별시
아동복지 사업안내
P162~3, 166

제2장

가정위탁신청

가. 대리양육·친인척 가정위탁

| ① 신청 | ② 아동 및 위탁가정 환경조사 | ③ 가정위탁보호 결정·통보 | ④ 사례관리 | ⑤ 가정위탁보호 종결 |
|-------------|---------------------------------------|--|--|-----------------------|
| 아동&위탁보호 희망자 | 동주민센터/ 자치구 | 자치구 | 동주민센터 자치구 가정위탁지원센터 | 자치구& 가정위탁지원센터 |
| 신청 | 조사상담 서식작성 및 제출/ 위탁부모 범죄경력 조회 | 위탁보호 결정 센터 통보 관련서류 (별지1-4호) 발송 | 아동카드 관리 상담 및 관리 업무 지원 부모교육 협조 | 종결 또는 연장 통보 및 사후관리 |

<신청>

- ① 희망자: 관할 아동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가) 가정위탁보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호)

TIP ◎ 가정위탁보호 신청 동시에 기초생활수급권, 디딤씨앗통장을 신청

<아동 및 위탁가정 환경조사>

- ② 동주민센터: 서식작성 및 자치구 제출
가)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시행규칙 별지 2호)
나) 보호대상아동 조사서(시행규칙 별지 3호)
다) 아동카드(시행규칙 별지 4호)

TIP ◎ 담당 공무원은 아동카드에 친부모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상세히 기록

- ② 자치구: 범죄경력조회 실시
가)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시행규칙 별지 8호)
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시행규칙 별지 9호)

1. 유형별 선정절차

2017 서울특별시
아동복지 사업안내
P162~163, 166

<가정위탁보호 결정통보>

- ③ 자치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위탁보호 결정
 - 가)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은 보호자가 있으므로 자치구에서 책정함
 - 나)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서울시아동복지센터에 통보하고 **관련 서류 (시행규칙 별지 1호~4호)를 7일 이내 함께 발송**
 - 다) 위탁부모에게 부모교육 이수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사례관리에 협조해야함을 안내

TIP

☞ 유형변경: 아동의 위탁보호자 변경사유 발생 시 신규책정 절차와 동일하게 서식 작성 및 조사·결정·통보 절차가 필요함

<사례관리>

- ④ 동주민센터, 자치구, 가정위탁지원센터: 부모교육, 사례관리 실시
 - 가) 동주민센터, 자치구: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 진행시 인원모집·장소제공 등에 협조하며,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아동 및 위탁가정 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유
 - 나)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 가정위탁보호 결정 통보를 받은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는 아동을 위탁가정으로 배치하고, 관할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사례관리 실시

<가정위탁보호종결>

- ⑤ 자치구,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 가정위탁보호 종결
 - 가) 친가정 복귀를 원하는 보호자는 구청장에게 아동귀가신청서 (시행 규칙 별지 5호) 제출
 - 나) 구청장은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장의 의견을 듣고 귀가조치 단, 아동학대로 인해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을 귀가 조치할 경우 가정위탁지원센터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소견서를 송부받아 귀가조치 여부를 판단

2017 서울특별시
아동복지 사업안내 P168

2017 서울특별시
아동복지 사업안내
P168~169

1. 유형별 선정절차

2017 서울특별시
아동복지 사업안내
P164~165, 167

나. 일반 가정위탁

| ① | ② | ③ | ④ | ⑤ |
|----------|-------------------------------|--|--|----------------------------------|
| 신청 | 아동 및 위탁가정 환경조사 | 가정위탁보호 결정·통보 | 사례관리 | 가정위탁보호 종결 |
| 아동 | 동주민센터 자치구 서울시아동 복지센터 |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 동주민센터 자치구 가정위탁지원센터 | 서울시아동 복지센터 자치구 가정위탁지원센터 |
| 신청 | 조사상담 서식작성 및 제출 | 위탁보호 결정 자치구 및 센터통보 관련서류 (별지3,4호)발송 | 아동카드 관리 상담 및 관리 업무 지원 부모교육 협조 | 종결 또는 연장 통보 및 사후관리 |
| 위탁보호 희망자 |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 자치구 | | |
| 신청 | 위탁부모 의뢰 | 수급자 책정, 양육보조금 지원 등 사후조치 | | |
| | 가정위탁 지원센터 | | | |
| | 위탁부모 선정 서식작성 및 제출 | | | |

<신청>

- ① 희망자(아동): 친권자, 후견인 등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가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에 신청
- ① 희망자(위탁보호):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신청
 - 가) 가정위탁보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호)

TIP

☞ 가정위탁보호 신청 동시에 기초생활수급권, 디딤씨앗통장을 신청
☞ 수급비 모니터링 제외대상에 일반위탁가정이 포함됨을 반드시 안내

<아동 및 위탁가정 환경조사>

- ② 동주민센터, 자치구: 조사 및 서식 작성 후 서울시아동복지센터 의뢰
 - 가) 보호대상아동조사서(시행규칙 별지 3호)
 - 나) 아동카드(시행규칙 별지 4호)
 - 다) 가정위탁아동보호동의서(지침 서식 29호)
 - 라) 가족관계부

TIP

☞ 담당 공무원은 아동카드에 친부모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상세히 기록
☞ 아동조사서 작성시 아동의 혈연관계(조부모 및 친인척 범위까지) 조사하여 대리양육, 친인척위탁 책정 가능성 심사, 혈연관계 조사하였으나 양육이 어려운 경우에 일반위탁으로 의뢰하도록 안내

1. 유형별 선정절차

2017 서울특별시
아동복지 사업안내
P164~165, 167

- ② 서울시아동복지센터: 위탁가정 발굴 의뢰 및 위탁가정 범죄경력 조회
- 가) 아동과 관계된 서류 첨부하여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에 위탁가정 발굴 의뢰
 - 나)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추천한 일반위탁부모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 (1)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시행규칙 별지 8호)
 - (2) 범죄경력조회 동의서(시행규칙 별지 9호)

TIP ◎ 위탁가정에서 동거중인 만18세 이상의 구성원은 범죄경력 조회

- ②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 의뢰된 아동에 적합한 위탁가정 선정
- 가) 가정위탁보호 가정조사서(시행규칙 별지 2호)
 - 나) 일반위탁부모 추천서(지침 서식 34호)
 - 다) 가정위탁 가족 동의서(시행규칙 별지 9호)

TIP ◎ 보호필요아동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위탁가정이 지정되는 경우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위탁부모 적합성 검증 절차 엄수

<가정위탁보호 결정, 통보>

- ③ 서울시아동복지센터: 조사결과 바탕으로 가정위탁보호 결정
- 가) 가정위탁보호 결정 후 그 결과를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자치구에 통보하고 아동카드 등 관련서류(시행규칙 별지3, 4호)를 7일 이내 발송
 - 나) 위탁부모에게 부모교육 이수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사례관리에 협조해야함을 안내

③ 자치구: 사후조치

- 가) 가정위탁 결정 통보를 받은 위탁아동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고 양육보조금, 상해보험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가정위탁보호 결정, 통보>

- ④ 동주민센터, 자치구, 가정위탁지원센터: 부모교육, 사례관리 실시
- ▶ 대리양육, 친인척 가정위탁 과정과 동일

<가정위탁보호종결>

- ⑤ 자치구, 서울아동복지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친가정 복귀 및 위탁종결
- ▶ 대리양육, 친인척 가정위탁 과정과 동일

2. 지원내용

2017 서울특별시
아동복지 사업안내
P172~174

| 구분 | 지원 내용 |
|-------------------------|---|
| 양육보조금 | 지원액 : 아동 1인당 월15만원 지 급 : 위탁가정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 전액 지급 중지가 결정된 달까지 지급 신 청 : 위탁아동 선정 시 자치구 에서 사후조치로 처리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비(수급비) | 방 법 : 생계·의료·교육 등의 해당급여를 별도가구로 보장하는 개인단위로 실시 신 청 : 위탁보호 신청과 동시에 이루어져 자치구 에서 책정 >>TIP · 급여관리 제외 대상: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사람이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 하는 「민법」상 3촌 이내 친족이거나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위탁 가정의 위탁부모로 급여의 착취·유용 등의 우려가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한 경우 · 「가정위탁보호아동은」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보장 시설생활자에 대한 수급자범위 특례와 가족간의 부양기피 사유를 이유로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유예가 가능 |
| 효정신 함양비 | 지원액 : 50천원/ 세대·년2회(설·추석) 대 상 : 부모 중 한부모이상이 사망한 세대에 지원 |
| 대학입학금 | 지원액 : 3,000천원/ 인·년 대 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진학자(사이버대학 포함) 신 청 : 대학합격통지서 등 증빙자료 자치구 에 제출 >>TIP · 고지된 대학입학금 중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국장학재단 장학금과 중복지원 불가하므로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 · 학점인정을 통한 대학진학의 직업전문학교, 예술종합대학 등은 해당 되지 않음 |
| 자립정착금 | 지원액 : 5,000천원/ 명 대 상 : 18세 이상의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연장보호종결아동 포함) 신 청 : 자립정착금 수령 1개월 이전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아동분야 사업안내 서식4호>를 자치구 에 제출 |
| 직업훈련비 | 지원액 : 6,000천원/ 인·분기 대 상 : 위탁아동 중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취업을 대비하여 기술교육학원에 다니는 자 (단, 취업 및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과후학교 특기 적성 교육 포함) 신 청 : 학원수강료 영수증 등 구비서류 자치구 에 제출 |
| 미 진학생 학원 수강료 | 지원액 : 6,000천원/ 인·분기 대 상 : 학교에 재학하지 않고 기술교육 또는 고·대입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학원에 다니는 자 신 청 : 학원수강료 영수증을 자치구 에 제출 |

2. 지원내용

2017 서울특별시
아동복지 사업안내
P172~174

| 구분 | 지원 내용 |
|--|---|
| 상해보험료 | 지원액 : 1인당 연 65천원 이내 대 상 :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 내 용 : 부양자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통원 의료비 등 신 청 : 보험사고 발생시 자치구 에 신청 >>TIP • 자치구에서는 보험금 청구서 작성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가정위탁 아동 상해보험가입 업무처리 안내』 참조 • 18세 이상(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제외) 가정위탁아동은 지원 대상이 아님 |
| 심리치료비 | 지원액 : 심리정서치료비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20만원(1회) 이내 내 용 :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교통비 신 청 : 자치구 >>TIP • 18세 이상(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제외) 가정위탁아동은 지원 대상이 아님 |
| 전세자금 대출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가정, 5년 이내 가정위탁 종결아동) | 대 상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7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이하로서 무주택인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가정, 5년 이내 가정위탁 종결아동 대출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내 용 : 일반주택 전세자금 대출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신 청 : 위탁아동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에서 한국 토지공사에 대상자 추천 및 신청 >>TIP • 지원절차 등 내용과 관련하여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지원 업무처리 지침(국토해양부)』 참고 |
| 디딤씨앗통장 | 지원액 : 아동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1:1 정부매칭으로 월4만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 대 상 : 만0세~만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 (정부매칭 지원은 만18세 미만까지이지만, 적립계좌는 만24세까지 계속 저축 가능) 신 청 : 위탁아동 선정 시 관할 주민센터 에서 바로 신청가능 >>TIP • 보호필요아동이 가정 복귀하면 중도해지가 아니라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지원 • 서울특별시에서 진행하는 통장사업 중복가입 불가 |
| 위탁아동 소득공제 | 대 상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내 용 : 만18세 미만의 위탁아동만 해당되며,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통합하여 계산 >>TIP • 위탁아동 양육에 대한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 • 증빙서류 : 가정위탁 보호확인서 |

03

1. 보육/학습

2. 의료/주거 생활안정지원

3. 인재양성

제3장

어린이재단 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용

- 아동과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 전반 경제적 지원
- 학업능력향상 및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지원금액 : 매월 일정 후원금 지원

| 구분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
| 의료비 | 희귀질환, 화상 등 질병으로 인해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아동 | 최대 3,000만원 이내 |
| 주거비 | 열악한 주거환경, 화재나 재난 등으로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정 | 최대 500만원 이내 |
| 생활안정자금 |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남다른 가족애를 가지고 밝게 성장하는 가정 | 최대 3,000만원 이내 |

| 구분 | 지원 내용 | |
|------|---------------------------|---|
| 지원대상 |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아동 | |
| 지원금액 | 연 800만원 이내 | |
| 지원기준 | 학업 | 초·중학생 고등학생 • 당해 연도 기준 '전국연합학력평가' 4개 영역 중 3개 영역 이상이 2등급 이내 • 전년도 1,2학기와 당해 연도 1학기 각각 학교생활기록부 공통4과목 평균 석차 등급이 2등급 이내 • 최근2년 이내의 교내 또는 전국, 광역 시도 단위 경시대회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경우 |
| | 예체능 | 최근 2년 내 교내 또는 전국, 광역시·도 단위 경시대회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경우 |

4. 초기정착/ 전문가정위탁

| 구분 | 지원 내용 | |
|--------|-------|-------------------------------|
| 초기정착지원 | 지원대상 | 당해년도 신규 책정 일반위탁아동 |
| | 지원금액 | 생필품, 학용품, 도서 구입비 등 1,000,000원 |
| 전문가정위탁 | 지원대상 | 일반위탁아동 중 학대피해아동 및 장애아동 |
| | 지원금액 | 심리치료비, 장애재활치료비 등 월 200,000원 |

상시업무

2017 서울특별시 아동복지 사업안내 P163, 176

1. 가정위탁보호(변경)사항 통보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에 대한 신규(전입 포함), 종결, 연장, 일시중지, 연장보호종결 등 변경 사항을 가정위탁보호(변경)사항 통보(지침서식 43호) 작성하여 관련서류(시행규칙 별지 3호, 4호)와 함께 **7일 이내**에 가정위탁지원센터로 발송

2017 서울특별시 아동복지 사업안내 P176

2. 정보제공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위탁아동의 부모에 대한 신원 확인 조치를 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아동복지법 제15조), 가정위탁보호결정 후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사례관리 중 친가정의 연락두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친가정의 정보(현거주지, 연락처 등) 요청시 협조

2017 서울특별시 아동복지 사업안내 P176

3.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발급

구청장은 통장발급 등 일상생활의 중요한 사항의 결정시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나 위탁부모의 신청에 의해 가정위탁보호확인서(서식 35호) 발급

2017 서울특별시 아동복지 사업안내 P178

4. 위탁아동 현황 제공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제공

2017 서울특별시 아동복지 사업안내 P162

5. 대리친인척 부모교육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6호)

자치구는 대리, 친인척 가정위탁보호 책정시 위탁부모에 대해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부모교육을 이수하도록 적극 안내하여야 하며, 교육 진행시 인원 모집, 장소제공 등을 협조

업무협력사항

2017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사업안내 P165

1. 일반위탁아동 전입신고, 수급자 책정 등 업무

가정위탁 결정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위탁아동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고, 양육 보조금, 상해보험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위탁아동 소재지와 위탁가정 소재지가 다른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에서 양육보조금, 기초생활수급지원, 상해보험 지원 등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위탁아동은 전입 절차 진행함

2017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p295

'가정위탁 보호 아동'은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호가 필요한 위탁아동이 수급자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함

2017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사업안내 P164

2. 위탁아동 디딤씨앗통장 가입

가정위탁보호신청서 제출시 디딤씨앗통장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2017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사업안내 P168

3. 양육환경점검 요청 (아동복지법 제15조의3)

연 1회 공문으로 요청

가정위탁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확인을 위해 아동안전 확인 조사를 가정위탁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실시함

4. 자립지원계획서 및 자립기술평가

매년 6월 경 공문으로 요청

위탁 선정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례

01

위탁아동 의뢰 시 위탁 보호자가 수급권자 또는 기타 정부 보호를 받고 있는 사례 (가족구성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책정된 사례)

02

아동과 거주지가 다르며, 인근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보호자를 위탁부모로 등록하여 가정위탁세대로 책정된 사례

03

친가정 단절이 아닌 경우(친부모와 연락이 되고 있으며,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에도 가정위탁세대로 책정된 사례

04

아동과 60세 이상 나이 차이가 나는 보호자를 위탁부모로 등록하여 가정위탁세대로 책정된 사례

한눈에 보는 가정위탁보호 절차

| 구분 | 동주민센터 | 자치구, 서울시아동복지센터 |
|----|--|---|
| 신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가정위탁보호의 신청, 접수, 상담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가정위탁) 기초생활수급권, 디딤씨앗통장 신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위탁보호의 신청, 접수 위탁가정범죄 경력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 친인척위탁: 자치구 - 일반가정위탁: 서울시아동복지센터 * 일반가정위탁(자치구 ▶ 서울시아동복지센터 의뢰) |
| 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리양육/친인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상담: 아동과 위탁보호 희망자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보호대상아동 조사서, 아동카드를 작성하여 자치구에 제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리양육/친인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주민센터에서 제출한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보호대상아동 조사서, 아동카드를 검토 - 위탁가정 범죄경력조회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상담: 아동과 위탁보호 희망자 - 가정위탁보호신청서,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보호대상아동 조사서, 아동카드를 작성하여 자치구에 제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주민센터에서 제출한 보호대상 아동 조사서, 아동카드, 가족관계부 검토 - 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가정 발굴 의뢰 -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제출한 위탁부모가 되고자 하는 자의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일반위탁부모 추천서, 가정위탁 가족 동의서 검토 - 위탁가정 범죄경력조회(서울시아동복지센터) |

| 구분 | 동주민센터 | 자치구, 서울시아동복지센터 |
|-------|--|---|
| 결정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리양육/친인척: 자치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위탁 책정 및 통보 - 가정위탁지원센터에 관련서류 발송(7일 이내) 일반: 서울아동복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자치구에 책정 통보 - 관할 기관에 관련서류 발송(7일 이내) - 수급자 책정(자치구) |
| 사례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카드 작성 및 관리 위탁아동, 위탁가정, 친가정 상담 복지서비스 제공 등 업무지원 위탁부모교육 협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카드 작성 및 관리 위탁아동, 위탁가정, 친가정 상담 복지서비스 제공 등 업무지원 위탁부모교육 협조 |
| 종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귀가 신청서 검토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논의·검토 가정위탁 종결 또는 보호기간 연장 가정위탁지원센터에 통보(종결 또는 연장) |